

운영규정 개요

기관명	고령재가복지센터											
대 표	이 준 길				기관장				이 명 직			
지정/ 신고일자	2024.01.01				지정형태				■방문요양 ■방문목욕 □주간보호			
인력현황	관리 책임 자	사무 국장	사회 복지 사	간 호 사	간 호 조 무 사	치 위 생 사	물 리 치 료 사	작 업 치 료 사	요양 보호사 1급	요양 보호사 2급	사무원	기타
	1		3						19			2
기관연락처	054-954-8899				이메일				ljg1963@hanmail.net			
팩스번호	054-954-8822				홈페이지							
사업장주소	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7-11											
주차시설	시설 주차장		교통편		• 자동차 : 남대구 ic - 동고령 ic • 대구 시내버스 606번 -> 고령시외 버스 정류장 • 서부정류장 → 고령시외 버스 정류장							
사업지역	대구지역 및 인근지역											
영업일 (영업시간)	평 일				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							
	토요일				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(당직교대근무)							
	일요일 및 공휴일				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(당직교대근무)							
	-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,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 까지 한다.											
	-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,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.											

운영 목적	본 기관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-------	---

이용자 모집방법	가.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노인성 질환, 즉 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나.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5등급) 다.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
이용계약 기간	가.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나.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계약 해제	가.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.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. 3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마.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.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
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	가. 보건복지부 「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」 급여종류별 [급여비용]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분인부담율(%)에 따르며,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별첨1(이용료)에 의하며,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없이 교부한다. 나.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라 본인부담금율을 15%, 9%, 6%를 기준으로 지급한다.
배상책임	가.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하게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.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
운영규칙의 비치	기관은 본 규칙을 사업장에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